



#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청약 안내

## ■ 청약일정

| 신청 대상자 | 거주구분               | 신청일자  | 신청방법 및 장소   |
|--------|--------------------|---|---|
| 다자녀 가구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2020.12.07.(월)<br>(청약 Home : 08:00 ~ 17:30)<br>(견본주택 : 10:00 ~ 14: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감정원 청약 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홈)</li> <li>-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li> <li>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본주택 방문접수</li> <li>- 장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72-2</li> </ul> |

-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진행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서류접수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분                   | 84A       | 84B      | 91A       | 91B      | 합계        |
|----------------------|-----------|----------|-----------|----------|-----------|
| 다자녀 가구               |           |          |           |          |           |
| 특별공급                 |           |          |           |          |           |
| 고양시 및 경기도 거주자(50%)   | 6         | 5        | 6         | 2        | 19        |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 5         | 4        | 5         | 2        | 16        |
| <b>합계</b>            | <b>11</b> | <b>9</b> | <b>11</b> | <b>4</b> | <b>35</b> |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임양아 포함)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시금액 이상)</li> <li>*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함</li> <li>* 자녀수에는 태어나 임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임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임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li> <li>*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li> <li>*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됨</li> <li>*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함</li> </ul>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동일 점수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li> <li>(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li> <li>(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li> <li>경기도 우선 공급 세대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함</li> <li>경기도 우선 공급 세대수에서 낙점된 고양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배정된 대상 세대수 내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고양시 1년 이상 거주)이 적용되지 않음</li> </ul>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평점요소           | 총 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 (1)    | 40   |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임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                |      | 4명             | 35 |   |
|                |      |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 (2)    | 15   |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
|                |      | 2명             | 10 |   |
|                |      | 1명             | 5  |   |
| 세대 구성 (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
| 무주택 기간 (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만 19세부터 기간을 적용)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만 19세부터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br>*사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거주 가입기간 (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거주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될 경우 본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 (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 특별공급은 1세대 내 1건만 청약신청 가능하므로 당첨 여부 관계없이 동일 세대 내 1인 이상 신청으로 인해,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자로 선정 시 입주자 선정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안내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